



# 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62호 2010. 10. 20. (수)

공 고	
-----	--

○ 공고 제2010-702호	[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].....2
○ 공고 제2010-705호	[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]....4
○ 공고 제2010-706호	[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].....6
○ 공고 제2010-707호	[울 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].....8
○ 공고 제2010-708호	[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].....10
○ 공고 제2010-711호	[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].....12
○ 공고 제2010-713호	[울 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.....14
○ 공고 제2010-715호	[울 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.....15
○ 공고 제2010-716호	[울 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장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.....16
○ 공고 제2010-717호	[울 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.....17
○ 공고 제2010-718호	[울 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장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.....18

## 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
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일립마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-702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복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###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과 지역 원·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·운영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조례명칭 변경

- 당초 : 「울산광역시 복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변경 : 「울산광역시 복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##### 나. 근거법령 변경(안 제1조)

- 당초 : 「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변경
  -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
  - 같은 법 시행령 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, 구성 및 기능)

##### 다. 협의회 기능 강화 및 구성원 확대

- 위원회 주요기능 추가(안 제3조)

- “지역 원·하청 간 공정거래 확립에 관한 사항” 추가
- “지역 노동시장 활성화”에 관한 사항
- 구성인원 확대 : 15인 이내 ⇒ 30인 이내(안 제4조)
- 의제별 대표자 회의 및 하부회의 신설(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)

#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
- 나.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- 경제진흥과, 전화 219-7463, 팩스 219-746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### 5. 기 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경제진흥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「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 **울산광역시 복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### **□ 개정이유**

-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개정(2010. 4.15)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시된 경쟁제한 규정에 대한 일부조문 정비 및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에 맞도록 인용조문 등 변경으로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**□ 주요내용**

- 화물자동차 하역주차구간내의 주정차 금지(안 제4조)
- 시장 진입제한 및 사업활동 제한 등 조례에 명시된 경쟁제한 규정개선(안 제7조)
-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따른 가산금 부과비율 조정(안 제7조)
- 장애인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및 기준비율 상향 조정(안 제20조)

## □ 의견제출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. 11. 9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교통행정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(전화 052-219-7476, 팩스 052-219-747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

## □ 기타사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-706호

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**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**

### **□ 개정 이유**

-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,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
-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수강료 반환규정을 현실화 해줌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실현

### **□ 주요 내용**

- 수업료의 반환에 대한 규칙 개정(안 제17조)

## □ 의견 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. 11.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평생교육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(전화 052-219-7572, 팩스 052-219-7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·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·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·기타 참고사항

## □ 기타사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-707호

울산광역시 복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 **울산광역시 복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### **□ 개정 이유**

-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복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,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복구의 실현

### **□ 주요 내용**

- 제3대학 학과에 대한 개정(안 제13조)
- 제3대학 졸업 및 포상, 총동창회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)



## □ 의견 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.11.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평생교육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(전화 052-219-7572, 팩스 052-219-7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

## □ 기타사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 **울산광역시 복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**

### **□ 개정 이유**

-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복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,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복구의 실현
-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수강료 반환규정을 현실화 해줌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실현

### **□ 주요 내용**

- 수업료의 반환에 대한 규칙 개정(안 제8조)

## □ 의견 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0. 11.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평생교육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(전화 052-219-7572, 팩스 052-219-75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·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·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·기타 참고사항

## □ 기타사항

-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-711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(안 제1조)
- 나. 관련 용어의 정의, 조례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(안 제2조 내지 제4조)
- 다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·운영 근거 및 기능의 명시 (안 제5조 내지 제6조)
- 라.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, 구매의무 및 예외경우의 명시 (안 제10조 내지 제14조)
- 마.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지원, 구매문화의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(안 제17조, 제18조)
- 바.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, 구매촉진 기여자(단체)에 포상 등을 규정 (안 제19조, 제20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환경위생과장)에게 전화,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219-7362, FAX 219-737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##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0 - 713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법」을 3개법으로 분법(법률 제10219호-10221호, 2011. 1. 1 시행)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전안전부의 「구세 기본조례 표준안」에 의거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」를 전부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
- 나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인용조항 반영
- 다.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
- 라.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
- 마.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세무과 (전화 052) 219-7273, 7263. FAX 052) 219-727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0 - 715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  
울산광역시복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법」을 3개법으로 분법(법률 제10219호-10221호, 2011. 1. 1 시행)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「구세 조례 표준안」에 의거 「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」를 전부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세목의 간소화(16개-11개) 체계에 맞추어 정비
- 나. 「지방세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
- 다.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중복되는 사항 등 조문정비
- 라.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「지방세법」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복구 세무과(전화 052) 219-7273, 7263. FAX 052) 219-727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- 716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법」을 3개법으로 분법(법률 제10219호-10221호, 2011. 1. 1 시행)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「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안」에 의거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전부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구세 기본조례」에 위임사항과 인용조문 반영
- 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 관련조문 정비
- 다. 관련된 서식 정비(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21호서식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세무과(전화 052) 219-7273, 7263. FAX 052) 219-727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



##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- 717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20일  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법」을 3개법으로 분법(법률 제10219호-10221호, 2011. 1. 1 시행)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「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」에 의거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전부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유공자, 평생교육시설, 임대주택,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일부 이관되어 삭제함.
- 나. 지방의료원에대한(등록면허세, 재산세,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)감면 신설 (안 제4조)
- 다. 아파트형공장을 →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변경 (안 제7조)
- 라.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으로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신설 (안 제14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세무과 (전화 052) 219-7273, 7263. FAX 052) 219-727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0 - 718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 월 20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법」을 3개법으로 분법 (법률 제10219호-10221호, 2011. 1. 1 시행) 됨에 따라 구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「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표준안」에 의거 「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」을 전부제정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구세 기본조례」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
- 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및 관련법령 정비
- 다. 관련된 서식 정비(별지 제1호부터 제85호의4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세무과 (전화 052) 219-7273, 7263. FAX 052) 219-7279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